

경운대학교 디자인센터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'우리대학교'라 한다) 디자인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디자인센터는 경운대학교 디자인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라 칭하고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우리대학교 디자인 문화 활성화 및 우리대학교의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센터의 운영
2. 우리대학교의 정체성 관련 디자인 개발 및 보급
3. 우리대학교 광고 및 홍보물 기획 및 제작
4. 각종 디자인 관련 기획, 편집 및 제작
5. 교내 각종 디자인 관련 결과물 연구사업
6. 멀티미디어분야 교내·외 프로젝트 및 사업지원
7.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(조직과 업무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우리대학교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디자인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인력구성)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해 계약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계약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교의 관련 인사 규정에 따른다.

제6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교비, 기부금 및 보조금, 연구사업의 수익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7조(회계) 센터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 예산회계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회계년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9조(보칙)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